

제13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43조 (입소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9명으로 한다.

제44조 (입소대상)

1.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④ 기타 관계 당국의 정원 외 수용 지시에는 예외로 한다.

2.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이용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다.

제45조 (입소모집)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 통하여 모집 한다

제46조 (입소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 한다.

제14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47조 (계약 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8조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같음한다.

2.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4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2.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 3.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50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1.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2018.01.01.기준]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4.5등급
요양급여	노인요양시설(개정법)	56,960원	52,850원	48,720원
비 급 여	상급침실 이용료	-원		
	식재료비(1식)	3,200원*3식=9,600원		
	간식비(1회)	600원*2회=1,200원		
	이/미용료등	-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 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반	20%	15%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10%	7.5%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세부내역(30일 기준)

일반	경감	기초
----	----	----

구 분		1등급	2등급	3,4,5등급	내 역
총 계		1,708,800	1,585,500	1,461,600	
요양보험 부담비용	요양급여비용(80%)	1,367,040	1,268,400	1,169,280	일반
	요양급여비용(90%)	1,537,920	1,426,950	1,315,440	경감
	요양급여비용(100%)	1,708,800	1,585,500	1,461,600	기초수급
개인 부담비용	요양급여비용(20%)	341,760	317,100	292,320	일반
	요양급여비용(10%)	170,880	158,550	146,160	경감
	요양급여비용(0%)	-	-	-	기초수급
	식사재료비/간식비	324,000	324,000	324,000	
	상급침실 이용료	-	-	-	
	소 계	665,760	641,100	616,320	일반
		494,880	482,550	470,160	경감
		0	0	0	기초수급

2.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외부 이동 교통비 및 경비 일체의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제51조 (월이용료의 납부방법)

1.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 계좌번호 : 국민은행 (834701-04-125505), 도봉하루요양원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52조 (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제5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 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제54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